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철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66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5일

발 의 자: 황철규,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동욱,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민병주,
박 석, 서호연, 송경택,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이봉준, 이상욱,
이숙자, 이용균, 이효원,
이희원, 장태용, 채수지,
최유희, 최진혁, 허 훈,
홍국표 의원(31명)

1. 제안이유

- 경계선지능 학생과 학습부진아의 정의가 상당 부분 중복됨에 따라 두 조례를 통합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중등 교육법」 개정(2023.6.28.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다.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라.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이나 진단검사 등의 추진에 있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해당 조례 폐지와 관련한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해 규정함(부칙 제2조~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4조의3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지만,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 학습이나 생활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인지능력 상태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

선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진단검사의 대상과 방법, 시기, 경계선지능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교원 연수 및 보호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 학생으로서 지원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검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심층 전문검사의 시행 및 지원
2.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
3. 경계선지능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4. 경계선지능 학생의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6.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이 경계선지능 학생의 선별과 학습능력 향상,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위한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이나 진단검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

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 제1항제6호의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과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와 기관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

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4조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	○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으로 기존 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2	제5조 (진단검사)	×	○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학교 자체 개발 도구 등을 활용한 학기 초 기초학력 진단(초1~고3)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기 추진중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3	제6조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사업 등)	△	○ 경계선지능 학생(과외)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심층 전문검사의 시행 및 지원은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 심층 전문검사는 일부 기 편성되어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확대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상 범위 및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 시점에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제7조(위탁)	△	○ 진단검사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현재 위탁사무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5	제8조(자문)	×	○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자문하는 내용으로 기추진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6	제9조 (협력체계 구축)	×	○ 관련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기존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비용은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1)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조사**는 현재 관련부서 확인결과 기존인력 활용 또는 전문기관 의뢰 등 등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음
(기존) 서울시교육청 기초 학력 진단 검사는 교육과정 범위의 내용을 적절히 이수하고 있는지 학생의 학력 및 수준을 알기 위한 검사로,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맞춤형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학교 자체 개발도구 등을 활용한 학기 초 기초학력 진단 실시(초1~고3)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학생 문해력·수리력진단검사 개발·시행(초·중고210교, 학생45,000명 참여)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협력강사, 키다리샘, 학습지원 튜터, 초6·중3 전환기 채움 학기제 운영 등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 지원하고 있음. 그 외 모든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두드림학교 지정 및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초 602교, 중 390교, 고 317교(총 1,309교), 2023 기초학력 맞춤형교육 선도학교 선정 및 운영: 초 56교, 중 12교 등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밖 지원으로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의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상담' 운영하고 있으며,

◆ 2023년 서울지역 학습도움센터 추진실적을 참고자료로 제시함

- 서울지역 학습도움센터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상담' 운영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발췌(2024.2.)
: (학생 수) '22년 4,233명 → '23년 3,895명
: (상담 회기 수) '22년 51,820회기 → '23년 58,219회기
- 난독·경계선 지능 지원 확대 : '22년 975명 → '23년 1,841명
- 난산 학생 지원 시범 운영 : '22년 31명 → '23년 38명

(심층전문검사)는 기 편성(검사비용+ 치료지원비)되어 추진중이며, 대상 확대 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 심층 전문검사비 단가 : 1인당 200,000원 ~ 250,000원 소요되면 1인당 25~30회 통상적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교육청 예산서 참고 : 1인당 2,000천원 기편성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초·중등교육법」 개정(2023.6.8.시행)과 관련 경계선지능 학생과 학습부진아의 정의가 상당 부분 중복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두 조례를 통합하여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 경계선지능 학생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진단검사 등을 기 추진중에 있으며 실태조사 및 심층전문검사 등을 확대 시행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상 범위 및 기준 등이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참고]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향상지원 예산 현황

사업명	예산액
기초학력향상지원	= 12,730,684천원
	○ 기초학력보장지원 : 8,549,000천원
	○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 : 282,000천원
	심층진단 및 치유연계지원 2,000,000원 × 90명 = 180,000천원
	○ 학습상담운영 : 3,899,684천원
심층진단 및 치유연계지원 2,000,000원 × 70명 × 5명 = 1,180,000천원 + 2,000,000원 × 50명 × 3명 + 2,000,000원 × 50명 × 3명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	= 9,130,700천원
	○ 단위학교기초학력책임지도제 : 8,540,000천원
	○ 역량강화 지원 : 210,000천원
	○ 전화기기본학력보장 프로그램 : 376,700천원

자료: 2024 서울시교육청 예산서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l004@seoul.go.kr